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에 대한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1호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고시

제3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11조제4항 전단”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9조제2항 후단”을 “법 제9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5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

제7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같은 조 제3항”을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법 제21조제14항”을 “법 제21조제15항”으로, “반영하여야”를 “반영해야”로 한다.

제10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16제10항”을 “법 제48조의16제11항”으로 한다.

제11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1조”를 “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2호사목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법 제32조제3항”을 각각 “법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해운법 시행령」의 개정)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u>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의 고시</u>	11. ----- ----- <u>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접수 및 고시</u>
12. ~ 15. (생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u>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준 고시</u>	16.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등 처리기준의 <u>접수 및 고시</u>
17. ~ 25. (생략)	17. ~ 25. (현행과 같음)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 간) <u>법 제11조제4항 전단</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란 10일을 말한다.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 간) <u>법 제11조제4항</u>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u>법 제9조제2항 후단</u>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u>제출하여야</u>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u>법 제9조제2항</u> ----- ----- ----- ----- -- <u>제출해야</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15조제3항</u>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u>법 제15조제2항</u> ----- -----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3. <u>법 제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협의</u> 4. ~ 24. (생략) ② (생략)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u> 4.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삭 제	
1의2. ~ 6. (생략)	1의2.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및 <u>같은 조 제3항</u>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 ----- ----- ----- <u>법 제30조제2항</u> ----- ----- -----
9. ~ 15. (생략)	9. ~ 15.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 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한다. 1. 2. (생략)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 5. (생략) ② (생략)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조제2항----- -----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주무관청은 <u>법 제21조제14항</u> 에 따라 부대사업의 이익을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 적정 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 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의 인하, 제37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감 등에 사용하여 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실 시협약에 <u>반영하여야</u> 한다.	제18조의2(부대사업 이익의 사용) ----- <u>법 제21조제15항</u> ----- ----- ----- ----- ----- ----- ----- ----- ----- ----- ----- <u>반영해야</u>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u>법 제48조의16제10항</u> 에 따라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② ~ ④ (생략)	제37조의11(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 <u>법 제48조의16제11항</u>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인·허가의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인·허가의제협의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그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① ----- ----- ----- ----- ----- 제3항-----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 신청) ① (생략)	제20조(등록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②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법 제31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u>법 제31조제1항</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 ----- ----- ----- ----- ----- ----- ----- ----- ----- ----- ----- -----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법 제32조제3항</u> 에 따른	라. <u>법 제32조제4항</u>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마. (생략)	마. (현행과 같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②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1. ~ 1의3. (생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1의4. ~ 1의6. 삭제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 -----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법 제32조제3항</u>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 <u>법 제32조제4항</u> ----- ----- ---
아. ~ 너. (생략)	아. ~ 너.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 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다 음 각 목의 권한	3.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법 제32조제3항</u> 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	다. <u>법 제32조제4항</u> -----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u>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의견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협의에 응한 것으로 본다.</u>	<u><삭 제></u>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0조의2(허가 등의 의제 협의)</u> <u>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u> <u>말한다.</u>	<u><삭 제></u>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의2(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협의 시 의견 제출기간) 법 제4 조의2제4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 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u>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 락 처	(044) 200 - 6744